

의견서

I. 피의자 인적사항

1.

성명	김영선
주민등록번호	600516- (64 세)
주거	경남 창원시 의창구
직업	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가조면 대초리
적용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항

2.

성명	명태균
주민등록번호	700823 (54 세)
주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직업	전 국회의원 김영선 지역사무소 총괄본부장
등록기준지	인천 동구
적용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항

II. 범죄사실

○ 피혐의자 김영선, 피의자 명태균의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별첨>

1.

성명	김영선
주민등록번호	600516 [REDACTED] (64 세)
주거	경남 창원시 의창구 [REDACTED]
직업	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등록기준지	경남 거창군 가조면 [REDACTED]
적용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항

2.

성명	명태균
주민등록번호	700823 [REDACTED] (54 세)
주거	경남 창원시 성산구 [REDACTED]
직업	전 국회의원 김영선 지역사무소 총괄본부장
등록기준지	인천 동구 [REDACTED]
적용법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 8. 23.경 피혐의자 명태균은 김영선 국회의원에게 기부행위를 요구하였고, 피혐의자 김영선은 회계책임자 강혜경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전달해주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명태균에게 5,055,000원의 기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90,316,000원의 기부행위를 요구하고, 기부행위를 하였다.

- 범죄일람표 -

연번	거래일자	거래시간	거래금액 <원>	거래내용	입출금명	출금 계좌번호	비고
1	2022-08-23	13:47:11	5,055,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2	2022-09-09	09:48:37	2,07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3	2022-09-20	10:34:50	4,25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4	2022-10-22	20:36:33	5,113,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5	2022-11-20	13:15:45	5,09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6	2022-12-21	17:24:58	5,08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7	2023-01-20	15:07:04	5,048,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8	2023-01-20	15:08:48	2,07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9	2023-02-21	11:40:11	5,26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10	2023-03-20	12:05:59	5,57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11	2023-04-20	18:47:19	4,94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12	2023-04-21	11:02:06	6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13	2023-05-21	18:42:26	4,8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14	2023-05-22	13:05:22	2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15	2023-06-22	17:54:59	4,5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16	2023-06-24	19:18:26	5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17	2023-07-24	16:04:09	4,8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18	2023-07-26	16:14:28	5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19	2023-08-22	19:30:18	2,62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20	2023-08-24	18:14:04	2,7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21	2023-09-25	12:22:48	4,45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22	2023-10-22	17:05:56	4,8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23	2023-11-24	08:19:59	4,8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24	2023-11-24	10:04:17	5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25	2023-12-28	08:48:17	5,000,000	CD이체	김영선	농협	
	합계		90,316,000				

III. 적용법조

1. 피의자 김영선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3조 제1항, 제116조

2 피의자 명태균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13조 제1항, 제116조

IV. 수사한 결과 및 의견

1) 창원시 의창구 선관위 수사의뢰 내용

- 선관위에서는 김영선이 회계책임자 강혜경을 통하여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총괄본부장 명태균(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수사의뢰하였다.

- 강혜경의 농협()계좌를 보면, 피혐의자 김영선으로부터 2021. 8.경부터 2022. 12.경까지 90,316,000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된다.

2) 피혐의자의 진술

- 김영선은 명태균에게 돈을 주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명태균은 김영선에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3) 수사결과 및 판단

- 선관위에서는 최초 2022. 8. ~ 2023. 5.까지 63,746,000원에 대하여만 수사 의뢰를 하였으나, 강혜경의 동의를 받아 2023. 5. 이후의 계좌내역도 확인한 바, 위와 같이 2023. 12. 28.까지 총 90,316,000원을 김영선이 강혜경 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확인된다.
- 강혜경은 2023. 8.경 지역구 사무실에 명태균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였고, 그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김영선이 송금한 것이며, 송금받은 이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명태균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다.
- 아래와 같이 김영선 - 강혜경 전화통화, 명태균 - 강혜경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김영선이 명태균을 지역사무소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 대한 월급명목으로 본인의 월급 50%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번	일시	전화녹취내용
1	2022. 7. 26. 15:30:38	명태균 : 다음 달부터 김영선 세비나오잖아. 강혜경 : 예. 명태균 : 20일 날 나오지? 강혜경 : 네 명태균 : <u>그럼 반 딱 정확하게 잘라갖고 그 저, 내가 계좌번호 보냈는데, 그기 보내면 돼</u> 강혜경 : 알겠습니다. 명태균 : <u>예, 내하고 반반하기로 했어</u> 강혜경 : 예. 알겠습니다.
2	2022. 8. 2. 11:23:52	강혜경 : 음... <u>일단 제일 첫 번째... 명 본부장님 임명장</u> 김영선 : 어어 강혜경 : 발급하는 그 문구하고 일단 올려놨고...
3	2022. 8. 22. 16:41:45	강혜경 : 의원님 통화 괜찮으세요? 김영선 : 어어어 강혜경 : <u>다름 아니라 아까 명 본부장님께서 그 ... 의원님하고 말씀이 됐다고? 이번 달 급여 반... 받아라 하셨고</u> 김영선 : 어

4	2022. 8. 23. 11:01:29	<p>김영선 : 어, 난데</p> <p>강혜경 : 네</p> <p>김영선 : 그 명 본부장이 그 저기, 돈 받는 거를 어떻게 받으라고 그러더나?</p> <p>강혜경 : 일단 현금으로 해야 되는데.... 제 통장으로 입금해주시면 제가 찾아서 명 본부장님한테 현금으로 찾아드리는 걸로...</p> <p>김영선 : 응, 그래 알았어. 그 저기, 계좌번호 하나 보내줄래? 타 특으로.</p>
5	2022. 8. 23. 14:41:11	<p>김영선 : 어, 난데</p> <p>강혜경 : 네네.</p> <p>김영선 : 그 보냈거든.</p> <p>강혜경 : 네네.</p> <p>김영선 : 현찰로 뽑아서 주라고</p>
6	2022. 8. 23. 17:37:40	<p>김영선 : 어, 혜경씨</p> <p>강혜경 : 네</p> <p>김영선 : 어. 그 저기, 명 대표한테 전했나?</p> <p>강혜경 : 네, 네 전달했습니다.</p>
7	2022. 8. 23. 20:59:18	<p>강혜경 : <u>의원님께서 5,055,000원을 보내셨더라고요</u></p> <p>명태균 : <u>아, 2분의 1이?</u></p> <p>강혜경 : 예.</p>
8	2022. 11. 20. 11:20:09	<p>김영선 : 어, 여보세요?</p> <p>강혜경 : 의원님 몸 좀 괜찮으세요?</p> <p>김영선 : 어어</p> <p>강혜경 : 다름 아니라 본부장님이 급여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셔가지고....</p> <p>김영선 : 어, 내가 오늘 그 저기... 점심 때쯤 나가자고 내가 보내줄게</p> <p>강혜경 : 네 알겠습니다.</p>
9	2022. 12. 21. 17:28:08	<p>강혜경 : 네, 의원님</p> <p>김영선 : 어, 혜경 씨</p> <p>강혜경 : 네.</p> <p>김영선 : 그 명본부장 그 저기, 입금했으니까,</p> <p>강혜경 : 알겠습니다.</p> <p>김영선 : 명본부장한테 얘기를 해</p> <p>강혜경 : 예, 알겠습니다.</p>
10	2023. 02. 21. 19:18:58	<p>강혜경 : 본부장님</p> <p>명태균 : 예, 안그래도 그 찾아어요?</p> <p>강혜경 : 찾아서 책상 밑에 놔뒀습니다.</p>

		<p>명태균 : 그 얼마 돼요? 강혜경 : 526 만원 명태균 예? 강혜경 : 526만원 명태균 : 예, 그래 알겠습니다.</p>
11	2023. 9. 25. 12:45:28	<p>강혜경 : 네, 의원님 김영선 : 어, 혜경씨 강혜경 : 네. 김영선: <u>그 이번에 그 저기, 국회활동비가 890밖에 안왔어. 445만 원 보냈으니까 그거 빼갖고테이블 위에 좀 갖다놔</u> 강혜경 : 알겠습니다.</p>

- 기부행위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2022. 7. 26. '명태균 - 강혜경의 전화통화내용을 보면, "명태균이 김영선의 급여의 반을 받기로 했다"고 하고, 2022. 8. 2. 김영선 - 강혜경 전화통화 내용을 보면, "명태균에 대하여 총괄본부장으로 임명하는 임명장의 문구에 대하여 대화한 내용"이 있다.
- 피혐의자 김영선이 강혜경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일시도 월급 날(매월 20일) 이후이다.
- 종합하면, 2022. 8.경 지역사무소에 명태균을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그에 대한 월급 명목으로 매월 20일경 위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의 기부행위를 입증할 자료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의견임.

위와 같이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4. 10. 8.

창원지방검찰청 수사과

검찰사무관